

석유 지하 탱크 법규

주 환경부는 주법Chapter 173-360 WAC 에 의거 석유 지하 탱크 규제법을 절차에 따라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될 법안은 2012년 4월 4일에 발표됩니다.

개정 법안은 2007년 주상원 법안 5475 에 의거 개정된 주법 90.76 RCW 에 따른것입니다. 주법을 개정하여 개정된 연방법 (42 U.S.C. Sec. 15801 et seq., Energy Policy Act of 2005, P.L. 109-58, Title XV, subtitle B)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될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석유지하탱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있지 않는 업소에 유류 공급 중단 행정명령권한을 주환경부에게 부여함.
2. 석유지하탱크를 소유 혹은 관리자가 이수하여야할 교육훈련 과정을 설치함.
3. 개스 주유기 아래부분에 유류 유출방지설치와 탱크와 유류관에 이중으로 누출 방지장치를 설치함.

이번 개정의 원래의도는 현재 거론되고있는 여러 관련사항도 함께 동시에 주법으로 개정하려 하였으나, 연방법의 개정이 아직도 진행중인 관계로, 범위를 축소하여 연방법 개정이 확정된 사항만 주법으로 개정합니다.

주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관련 개정법 자료를 제출합니다:

1. 주 환경 정책법에 의거, 법을 개정함으로써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않음을 확인서.
2. 영세업자에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확인서.
3. 비용-이득에 관한 분석 초본.

상기 관련 문서와 개정법안 초본은 아래의 앱을 참조 바람.

www.ecy.wa.gov/programs/tcp/regs/ust/2012/rule-making.html.

법규 개정사유

석유 지하탱크 법규는 석유 혹은 독극물을 함유한 지하탱크가 누출사고시 야기될수있는 심각한 건강침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와싱턴 주전체에 약 3,600개의 취급업소가 있으며, 총 9,500여개의 지하탱크가 이법규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매년 약 50여건의 신규누출 사고가 확인 보고되고있습니다

개정법안의 목적은 신규 누출 사고수를 줄이고, 큰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함에 있습니다.

담당 연락처:

Mike Blum
360-407-6913
mike.blum@ecy.wa.gov

추가 정보:

추가 정보를 원하는이는 아래 앱을 참조할것:
www.ecy.wa.gov/programs/tcp/ust-lust/tanks.html.

장애자를 의한 도움:

시각 장애자는360-407-7205 (Toxics Cleanup Program) 로 전화 문의 할것

청각 장애자는 711로연락 하여 Washington Relay Service 의 도움을 받으시고, 언어 장애자는 877-833-6341 로 문의 바람.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람

공청기간 마지막 일자는 2012년 5월 4일 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식 의견/ 질문서를 제출 바람:

1. 공청회 에 참가하여 의견을 구두로 발표함.
2. 이메일을 통해 의견서를 보냄: UTrule@ecy.wa.gov
3. FAX 를 사용 의견서를 보냄: (360) 407-7154
4. 편지를 통해 의견서를 보냄: Department of Ecology
Toxics Cleanup Program
Michael Feldcamp
PO Box 47600
Olympia, WA 98504-7600

공청회 일정

주 환경부는 아래 지정한 4 장소와 시간에 법규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참가하여 질문 혹은 증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epartment of Ecology
Eastern Regional Office
4601 North Monroe Street
Spokane, WA 99205
April 24, 2012 at 1:30 pm |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Department of Ecology
Northwest Regional Office
3190 160th Avenue SE
Bellevue, WA 98008
April 26, 2012 at 1:30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Department of Ecology
Central Regional Office
15 W Yakima Avenue
Yakima, WA 98902
April 25, 2012 at 1:30 pm |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Department of Ecology
Headquarters Office
300 Desmond Drive SE
Lacey, WA 98503
April 27, 2012 at 1:30 |

접수한 시민의견/질의서 에 관한 주 환경부의 답변

접수된 시민의견/탄원서는 공공기록이 됩니다. Concise Explanatory Statement (CES) 라 불리는 문서에 시민들이 제출한 질의에 관한 주환경부의 답변이 발표될것입니다. 이문서는 행정법에 의거 (RCW 34.05),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법규개정이후에 공공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제출자의 성명과 관련 의견/ 질의내용과 그에 따른 주 환경부의 답변이 게재됩니다.

법규 개정 예정일

주 환경부는 오는 2012년 6월 27일 이후로 관련 개정될 법규를 채택후 최종 공포할 예정입니다.

